

# 계약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문

## ■ 계약 일정 안내

대상	계약기간	계약장소
정당 당첨자	2025.03.16(일) ~ 03.18(화) 10:00 ~ 16:00	우정동 한양립스 더센트럴 홍보관(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70 1층)

※ 예비당첨자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 납부 계좌 안내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경남은행	207-0134-6984-00	신한자산신탁
발코니 확장대금(계약금)	경남은행	207-0134-6984-00	신한자산신탁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 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홍보관에서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당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 구비서류 안내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5.02.14.(금) 이후 발행 분]

구분	서류유형 필수/해당	구비서류	발급 기준	주요 확인 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이체 확인증 ※ 홍보관 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터넷 발급용의 경우 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 우정동 한양립스 더센트럴 분양사무실"을 필수 입력 후 발급분에 한해 계약가능
	○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본인	- 홍보관 비치
	○	수입인자(인지세) (아파트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계약서 각각 구매하여야 함)	본인	- 수입인자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수입인자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자(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자 구입 후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청약자	- 홍보관 비치(계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 신청자 위임 확인(용도: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본인 확인
○	대리인 도장	대리인	- 서명가능 (재외 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및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평면명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문

## ■ 인지세 안내

부동산 분양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 각각)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을 할 때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계약 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
납부기한·방법	-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00:30~22:00 동안 구입 가능 ② 우체국·은행에서 영업시간 동안 전자수입인지 구입 가능(방문 전 문의 요망)

## ■ 인지세 납부액 안내(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시 인지세가 납부됨에 따라 등기 시에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으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수입인지) 구매 방법

※ 온라인 이용방법

1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네이버 및 그 외 포털사이트에  
전자수입인지 검색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비회원서비스 or 회원 로그인 후  
구매 버튼 클릭

4

용도	과세문서종류	금액	건수	결제금액
1 인지세 납부	1. 부동산 등·소유권 이전	0.00 원	0 건	0.00 원
2 인지세 납부	2. 전세보증금 반환	0.00 원	0 건	0.00 원
3 인지세 납부	3. 부동산 등·소유권 이전	0.00 원	0 건	0.00 원
4 인지세 납부	4. 동산 양도 (자유채 등)	0.00 원	0 건	0.00 원
5 인지세 납부	5. 공판정, 위탁재산 등	0.00 원	0 건	0.00 원
6 인지세 납부	6. 공판정, 관도 등 제판권	0.00 원	0 건	0.00 원
7 인지세 납부	7. 신용카드 회맹 가입 등	0.00 원	0 건	0.00 원
8 인지세 납부	8. 생활필수품 리빙카드	0.00 원	0 건	0.00 원
9 인지세 납부	9. 채무 시문 및 수직증권	0.00 원	0 건	0.00 원
10 인지세 납부	10. 세무회계 문서 또는 용원 등	0.00 원	0 건	0.00 원
11 인지세 납부	11. 서정대여 계약서	0.00 원	0 건	0.00 원
12 인지세 납부	12. 세무대의 보충에 관한 증서	0.00 원	0 건	0.00 원
합계		0.00 원	0 건	0.00 원

용도: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종류: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5

출력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 전자 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트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오프라인 이용방법

우체국 또는 은행방문  
※ 방문 전 해당지점 문의 요망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 용도: 인지세 납부

결제 및 전자수입인지 발급  
※ 현금 납부만 가능. 발급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